

1-4 고속도로 건설 복합공종공사 제집비 적용방안 검토

방 침
건설관리처-2007
('07. 7. 24)

1. 개 요

고속도로 건설시 토목공사와 기타공사(터널부문 건축 및 설비 등)가 복합된 복합공종공사에 대한 원가계산시 제집비 적용방안 검토

※ 터널 기계설비 및 건축(터널관리동) 공사는 토목공사와 밀접한 연계 공종으로 원활한 공사추진과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토목공사에 포함하여 발주 (시설처 방침, '03.10.)

2. 현행 및 문제점

○ 현행 기준 : 공사의 규모, 기간, 공종에 따른 각각의 제집비율만 제시 (복합된 공사에 대한 기준은 없음)

※ 주요 제집비율 현황

구 분	토목공사 (50억원 이상, 13개월 이상)	설비공사 (10억원 이상, 13개월 이상)	건축공사 (5억원 이상, 13개월 이상)
간접노무비	11.2%	11.0%	10.2%
기타경비	7.1%	6.4%	5.6%
일반관리비	3.5%	4.1%	4.7%
이 윤	9%	15%	15%

○ 문제점 : 복합공종공사에 대하여는 노신별로 제집비 적용방법 상이

※ 최근 발주노신 제집비 적용 현황

구 분	제집비 적용 방법
전주-광양 (05년 발주)	각각 공사를 기준으로 제집비를 적용하여 합산
장흥-광양 (06년 발주)	주공종(토목공사)을 기준으로 단일 제집비 적용
여주-양평 (07년 발주)	주공종(토목공사)을 기준으로 단일 제집비 적용

3. 처리방안 검토

○ 관련 유권해석 (재경부) 내용

☞ 다수의 공종이 복합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 주공종을 기준으로 제집비를 적용함이 타당. (재정경제부 회제 41301-508, '03. 4.23.)

○ 공사비 비교 (진주-마산간 2, 7공구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단일(토목)제집비 적용시 (①)	각각의 제집비 적용시 (②)	증 감 (①-②)
2공구	계 토목공사 100,145 설비공사 97,573 건축공사 1,847	계 100,173 97,573 1,851	△ 28 - △ 4
7공구	계 토목공사 134,500 설비공사 131,324 건축공사 2,464	계 134,551 131,324 2,491	△ 51 - △ 27

☞ 단일(토목) 제집비 적용시 공사비 저렴

4. 검토결과

○ 제집비 적용방안 : 토목공사와 기타공사(건축, 설비 등)가 복합된 복합공종공사의 경우 주공종을 기준으로 제집비 적용

○ 적용대상 : 본 방침 시행일 이후 해당 공사부터 적용

붙 임 : 관련 유권해석 내용 1부. 끝.

【붙임】

문서번호	재정경제부 회제 41301-508 (2003.04.23)
제목	복합공사의 공사원가계산시 제비율 적용기준
질의내용	<p>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는 특성상 토목상 토목을 주공종으로 하여 건축, 기계, 전기, 통신을 모두 통합하여 1건의 공사로 발주하는 바, 이 경우 공사원가계산시 일반관리비 등 제비율 적용기준</p>
회신내용	<p>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으로 작성함에 있어 일반관리비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 작성준칙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별표3에서 정한율을 초과하여 계산할 수 없으며, 공사규모별로 체계적용하는 것인 바, 다수의 공종이 복합되어 발주되는 복합공사의 경우에 동 별표에 정한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복합공사의 주공종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불</p>